

---

#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제도 안내

---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
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



# 1

## 첨단기술기업 제도개요

### □ 첨단기술기업 제도목적

-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특구내 첨단기술분야의 유망기업 육성

### □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

- 연구개발특구(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) 내 입주한 기업일 것
- 첨단기술 분야의 국내·외 특허권(전용실시권 포함) 보유 및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·판매할 것
  - ‘산업발전법’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
-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
  -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합계
-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\*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
  - 다만, 연구·시험용 시설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

### □ 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

유형		내용
국 세	법인세	최초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	소득세	
지방세	취득세	부동산 취득세 면제
	재산세	부동산 재산세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
	개인지방소득세	최초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\* 특구내 사업장에서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한 매출 부분만을 감면받을 수 있음

\* 국세는 최저한세제도 적용 : 과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금 징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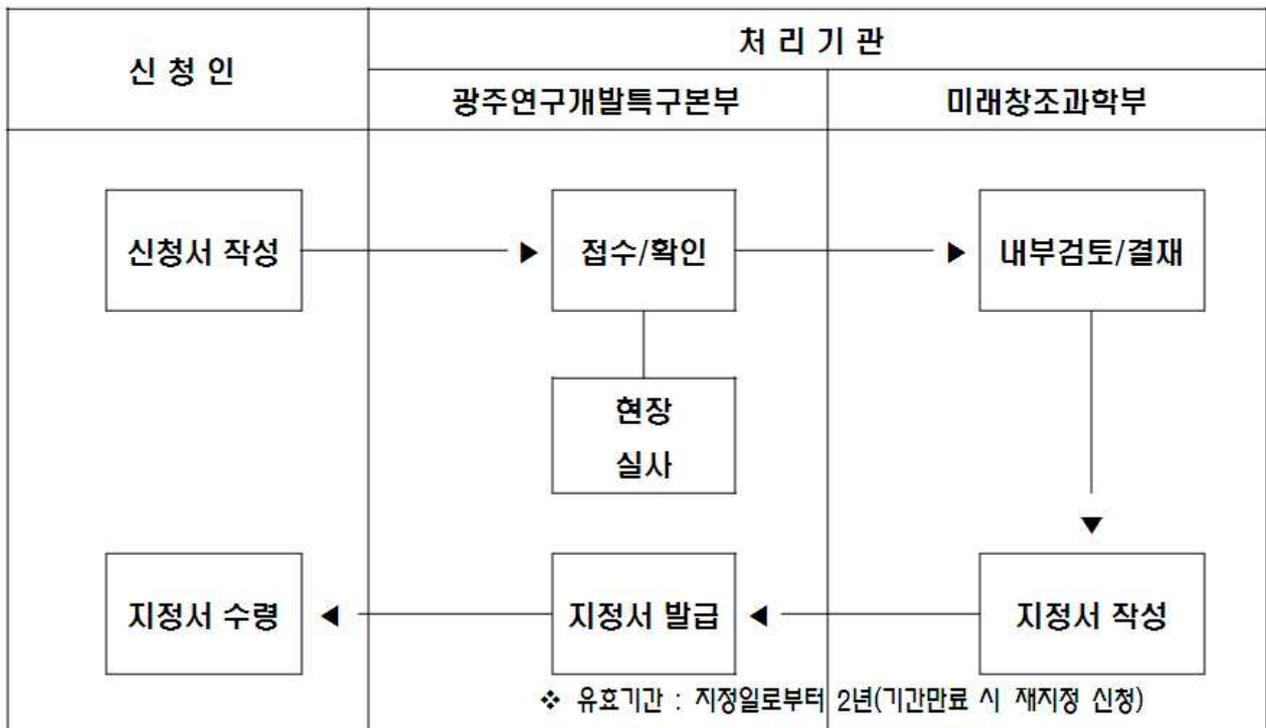
## 2

# 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

### □ 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

- (신청방법)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**광주특구본부\***에 제출
  - \* (제출처) 온라인 신청(광주특구포털 gj.innopolis.or.kr → 전자민원 서비스: 모든 서류는 관련 직인 날인 후 PDF로 스캔하여 접수)
- (유효기간)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**2년\***
  - \*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은 재지정 희망 시 유효기간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함
- (현장실사)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충족검토를 위해 **확인기관\***이 신청 서류와 현장 확인 실시
  - \*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한국산업기술평가원,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### < 첨단기술기업 지정 처리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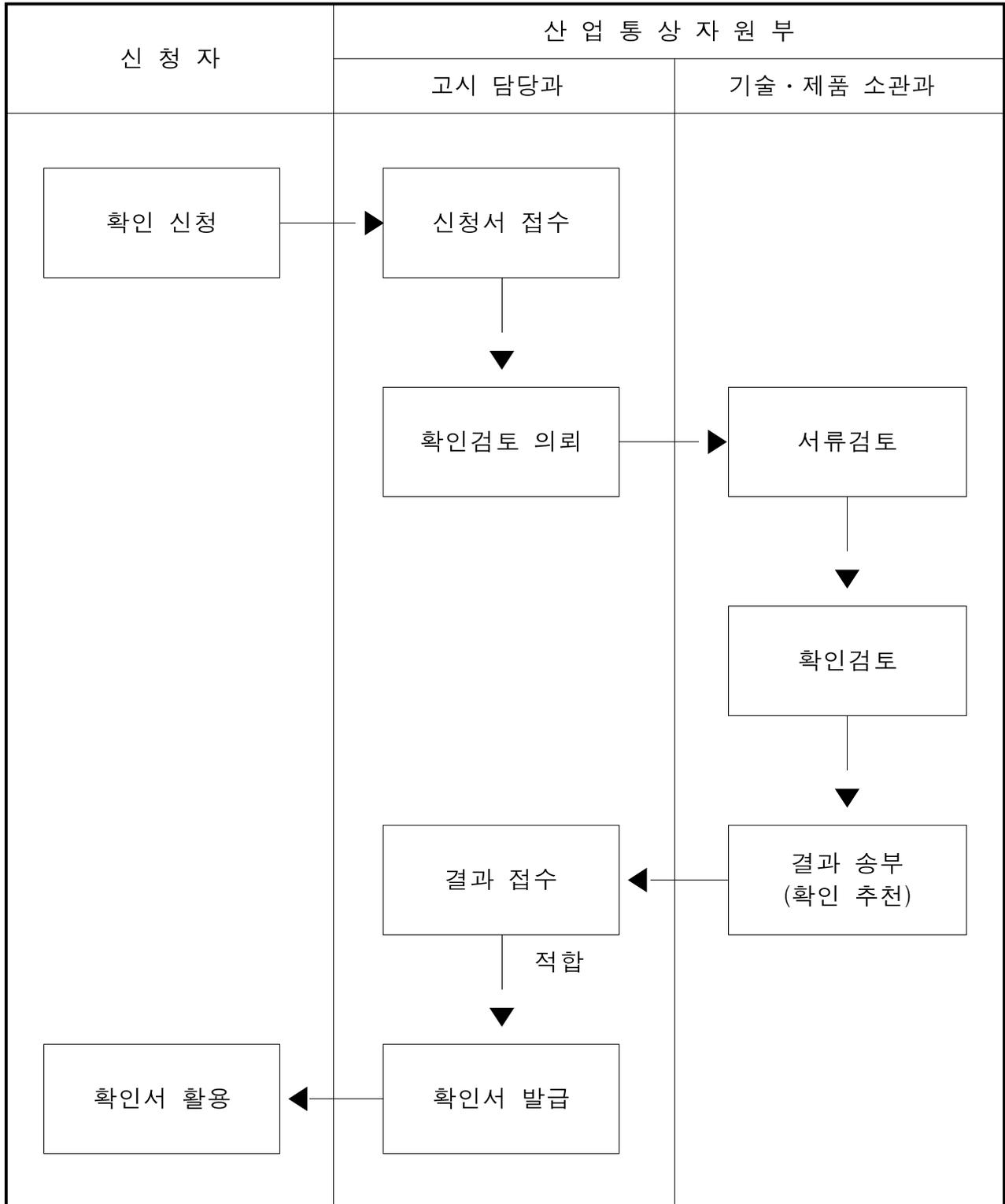


\* 신청서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40일

□ 첨단기술·제품 확인절차

- (신청방법)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

< 첨단기술·제품 확인절차 >



\* 신청서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14일(단, 서류보완 소요기간 미 산입)

## 3

## 첨단기술기업 신청서류

## □ 첨단기술기업 신청서류

제출 서류	첨부 서류	비고
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		별지 제1-1호
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첨부서류] 관련 특허등록증 또는 특허등록원부</li> <li>• [첨부서류] 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산업발전법' 제5조 및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' 고시에 해당여부 확인(붙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참조)</li> </ul> </li> </ul>	별지 제1-2호 제1-3호
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첨부서류] 재무제표(직전 4분기) 또는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• [근거서류] 부가세 표준 증명원(직전 4분기)</li> <li>• [근거서류] 첨단기술·제품 매출 원장(직전 4분기) 예) '14.5월에 신청할 경우, '13년 2/4분기 ~ '14년 1/4분기에 대한 서류 제출</li> </ul> ※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 전부 매출액	별지 제1-4호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첨부서류] 연구개발비 산정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지 제1-6호에 연구·시험용 시설 취득비용 항목별도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• [근거서류] 연구개발비 계정원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재료구입비, 연구시설이용비, 기술지도비용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[근거서류] 연구개발인력 월별 지급내역</li> </ul> ※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 전부 매출액	별지 제1-5호 제1-6호
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		1개월 이내 발행 본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첨부서류] 연구소 직원현황(KOITA 한국 산업기술진흥 협회 발행)</li> <li>* 확인기간 중 직원 변동 시 변동신고서 사본 포함</li> </ul>	
주주명부 및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		

## □ 첨단기술·제품 확인신청 서류

제출 서류	첨부 서류	비고
첨단기술·제품 확인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첨부서류] 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</li> </ul>	별지 제2-1호 제2-2호

**붙임****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류**

[별지 제1-1호 서식]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

**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**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기업명		사업자등록번호	
	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	E-mail	
	업종명		산업분류코드(세세분류) [ ][ ][ ][ ][ ][ ][ ][ ][ ][ ]	
	주소	본사	전화번호/팩스번호	
		사업장(공장)	전화번호/팩스번호 /	
부설연구소		전화번호/팩스번호 /		

기업 현황	설립일		창업 후 경과기간	
			1년 이상 [ ], 6개월 이상 1년 미만 [ ]	
	보유·생산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			
	국내외 특허권 보유 여부		보유한 특허의 등록번호	
	매출 실적	기간	년 분기 ~ 년 분기	
		연간 총매출액	천원	
		첨단기술제품 매출액(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)	천원 ( %)	
연구개발투자액(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)		천원 ( %)		
기업 홈페이지				
http://				
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[별지 제1-2호 서식]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

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

특허 및 첨단제품 현황				
생산·판매 제품	해당 첨단기술 및 제품 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			
	관련 특허			
	발명명칭		발명명칭	
	권리자		권리자	
	등록번호		등록번호	
<p>「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」 제2조제3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및 「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<b>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</b>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   ○○    대표   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<input type="checkbox"/></p>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p>1. 특허등록 원부</p> <p>2. 첨단기술·제품확인서(『산업발전법』 제5조 및 『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』 고시에 해당여부)</p>				



[별지 제1-4호 서식]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

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

매출액 내역		
직전 4분기 매출액 구분		금 액 (단위 : 원)
첨단 기술 제품	생산판매 제품(a) <small>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)</small>	원
	생산판매 제품(b) <small>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)</small>	원
	생산판매 제품(c) <small>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)</small>	원
	소계(A) = a+b+c	원
첨단기술제품외 기타 매출액(d)		원
총 매출액 (B) = a+b+c+d		원
연간 총 매출액 대비 첨단기술 및 제품매출액 비중(A / B)		%
<p>「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」 제2조제3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및 「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<b>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</b>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○○ 대표   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<input type="checkbox"/></p>		
<p>※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</li> <li>☞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 매출액</li> </ul>		

[별지 제1-5호 서식]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
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

연구개발비 내역			
직전 4분기 매출액(A)	원	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(B)	원
1. 기술개발비	합계 :		원
2. 인력개발비	합계 :		원
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(B/A)		%	
<p>「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1호 및 「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<b>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</b>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○○ 대표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<input type="checkbox"/></p>			
<p>※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개발비 산정표 및 근거서류 목록</li> <li>☞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 매출액</li> </ul>			

[별지 제1-6호 서식] 연구개발비 산정표

연구개발비 산정표 (별지 제1-5호 서식 관련)

(단위 : 천원)

구분	비 용	장부 금액	조정 금액	비고
1. 연구개발	<p>가. 자체연구개발</p> <p>1)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(이하 “전담부서등”이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. 다만,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.</p> <p>가) 「소득세법」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나) 「소득세법」 제29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</p> <p>다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</p> <p>2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(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)</p> <p>3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(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임차 또는 나목1)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·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</p> <p>나.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</p> <p>1)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(재위탁을 포함한다)함에 따른 비용(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</p> <p>가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</p> <p>나) 국공립연구기관</p> <p>다) 정부출연연구기관</p> <p>라) 국내외의 비영리법인(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</p>			

구분	비 용	장부 금액	조정 금액	비고
1. 연구개발	<p>마)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(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)</p> <p>바)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</p> <p>사)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</p> <p>아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</p> <p>자)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·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</p> <p>2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)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</p> <p>다.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</p> <p>라. 기술정보비(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)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 <p>마. 중소기업이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</p> <p>바.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</p> <p>사.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</p>			

구분	비 용	장부 금액	조정 금액	비고
2. 인력개발	<p>가. 위탁훈련비(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 교육훈련비</li> <li>2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 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</li> <li>3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</li> <li>4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</li> <li>5)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li> </ol> <p>나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 <p>다.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 <p>라.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</p> <p>마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p>			



## 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

1. 신청 기술의 개요

2. 신청 기술의 기술성

3. 신청 기술의 시장성

4. 산업재산권 현황(해당하는 경우)

5. 외부기관의 시험·인증 등(해당하는 경우)

## 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 작성방법 (별지 제2-2호 서식 관련)

### 1. 신청 기술·제품의 개요

- 신청 기술의 명칭 및 개요, 특징
- 신청 기술의 개발 기간, 과정, 방법 등 요약

### 2. 신청 기술·제품의 기술성

- 신청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
-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신청 기술의 우수성
-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 기술의 수준(정량화하여 기술)
- 핵심요소기술의 내용
-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(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등)  
※ 비교대상 기술이 없는 경우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표기

### 3. 신청 기술·제품의 시장성

-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
-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 제품 대비 우수성을 기술
-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, 동종 기업의 개발현황, 후발참여 예상기업의 현황
- 수출기대, 수입대체,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적 효과

### 4. 지식재산권 현황(해당하는 경우)

-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아래 표에 맞추어 기재

No	명칭	권리자	등록일	등록번호

※ 증빙서류(특허 등록증,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,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) 첨부

※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표기

### 5. 외부기관의 시험·인증 등(해당하는 경우)

-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시험·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
※ 해당 증빙서류 첨부
-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 
(예) 신기술(NET) 인증, 신제품(NEP) 인증,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,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, 이노비즈 인증 등  
※ 해당 증빙서류 첨부

※ 본 설명서는 첨단기술·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,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.